

2026 마포농수산물시장 축제특화사업(야시장 행사) 용역

과업지시서

2026. 7.

마포농수산물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

□ 과업 개요

- 과업명 : 2026 마포농수산물시장 축제특화사업(야시장행사) 용역
- 과업예산 : 일금칠천삼백만원정(W73,000,000, 부가세 포함)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0월 30일 까지
- 과업장소 : 마포농수산물시장 일원
- 과업범위
 - 마라톤 특화 야시장 1회, 농수산물 특화 야시장 1회(총 2회)
 - 마포농수산물시장의 특화된 테마를 적용한 '러너의 밤산책 야시장'과 '농수산물 특화 컨셉 야시장'을 활용하여 서울 내 도심형 문화관광형 시장 이미지 형성

□ 과업 목적

- 인접 체육,여가 인프라 연계를 통한 신규 고객층 유입
 - 시장 주변의 러닝크루와 축구팬들에게서 발생하는 막대한 외부 유동인구를 시장 내부로 직접 끌어들이기 위한 미끼 콘텐츠 구축
 - 기존 농수산물 시장의 주 고객층인 중장년층을 넘어, 그동안 시장 방문 목적이 없었던 2030세대와 액티브 시니어 등 새로운 소비 계층의 시장방문 유도
- 컨셉을 보유한 야시장 행사 개최
 - 배후 거주지 주민들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야시장 행사를 개최하며, 러닝과 건강이라는 컨셉을 바탕으로 특화 분위기 조성
- 스포츠 소비와 건강 신선식품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
 - 중고거래, 팝업 스토어를 구경하러 온 고객이 자연스럽게 시장의 먹거리와 피크닉 세트, 신선 식재료를 구매하도록 유도
- 지역축제와의 시너지 효과
 - 야시장 행사 중 1회분을 마포 지역축제인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의 부대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지역축제 다양성의 일부를 마포 농수산물 시장에서 제공하여 상호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
- 주력 상품의 엔터테인먼트화를 통한 시장 상품 홍보
 - 단순한 축제의 연장선이 아닌 농수산물 시장의 신선식품을 활용한 대회, 품평회, 이벤트를 개최하여 시장 방문 고객에게 이야기와 놀이가 있는 시장으로 각인

Ⅱ.

과업내용

□ 과업 내역

○ 러너의 밤산책 야시장(1회 운영)

- 행사일 : 10월 9일~10일(금~토)

9일	레크레이션 행사와 야시장행사 병행
10일	야시장행사 단독 진행

- 스포츠 동호회 이벤트용 콘텐츠 기획
: 인근 러닝크루, 축구 동호회와 사전 제휴
: 인플루언서 초청 레크레이션 방식의 운동 코칭 강좌, 단체 게임 등 이벤트 개최
- 러닝/축구 브랜드 부스 유치
: 청년층에 인기 있는 신진 스포츠 브랜드, 기능성 의류 스타트업 타겟으로 유치
- '단백질'과 야채 등 건강 선호 식품으로 구성된 야시장 컨셉 운영
- '운동컨셉'야시장으로 주류, 음식소비에 치중된 컨셉과 차별화 모색하여 지역주민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참여를 유도

구분	추진 내용	세부내용
마라톤컨셉 레크레이션	웜업(준비운동) 크루대향전	- 평화광장 구역 활용한 워업훈련 컨셉 레크레이션 ※ 전문코치 섭외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 필수 - 평화광장 구역 활용한 지역크루 모집-초청하여 크루대향전 레크레이션 추진
무대행사	개회/폐회식 공연	- 유관기관 관계자 초청 개회식 - 마포농수산물시장 비전선포식 퍼포먼스 - 폐회 공연 무대
야시장	먹거리장터 체험/이벤트 부스 거리공연	- 시장 상인 참여 먹거리 부스 운영 ※ 부족 구성메뉴는 푸드트럭이나 외부상인으로 보완 ※ 먹거리 컨셉은 '건강', '다이어트', '저탄고지' 등을 활용 - 야시장 방문객들이 즐길 수 있는 체험, 놀이 부스 운영 - 간이 버스킹존, 무대를 조성하여 공연 프로그램 제공 - 300석 이상의 야장 조성
홍보마케팅	사전홍보/마케팅 현장홍보	- sns지역타겟 마케팅 활용 사전홍보 진행(웹자보, 홍보영상) - 사전 언론홍보 게재 - 게릴라 현수막, 포스터 부착 등 오프라인 홍보 추진 - 행사일 주요 유동인구 동선 현수막, 배너 등 게재
판촉프로모션	구매인증 이벤트	- 야시장, 농수산물시장 구매인증 후 추첨 이벤트 기획/추진

행사장경관	야간경관 테마경관	- 줄조명, 경관 조명 조형물 활용 야간행사 분위기 조성 - 러닝 테마에 맞춘 경관 시설물 배치

○ 농수산물 특화 야시장(1회 운영)

- 행사일 : 10월 17일~18일(토,일)
- 마포구 축제담당 주관부서의 운영지침 준수
- 마포나루 새우젓축제 농수산물 컨셉 부대행사장을 중점으로 운영
- 새우젓축제 본 행사의 먹거리축제 부스 운영 지원
- 농수산물 활용 프로그램 및 이벤트 기획
- 마포농수산물시장 대표 농산물 활용 시민 참여 대회/전시 프로그램 운영

구분	추진 내용	세부내용
농수산물 이벤트	시민참여형 대회 상인참여 대회 현장 이벤트	- 시장 내 및 인접한 외부공간 활용 - 시장 대표상품 활용 공예/미술 대회(예:수박조각대회 등) - 대회 후 대회 제출물 전시 - 과일,야채 활용 공예 체험부스 운영 3개소 이상 - 농산물, 수산물 활용 참여형 놀이 이벤트 부스 3개소 이상
거리행사	버스킹 거리 퍼포먼스	- 양일간 버스킹 프로그램 운영 - 뽀에로, 마술 등 거리퍼포먼스 제공
야시장	본행사 운영지원	- 시장 상인 참여 새우젓축제 먹거리 부스 운영 지원 - 물품렌탈, 인력, 프로모션 등
홍보마케팅	현장홍보	- 행사일 주요 시장 진출입로 중심 현수막, 배너 등 게재
판촉프로모션	구매인증 이벤트	- 야시장, 농수산물시장 구매인증 후 추첨 이벤트 기획/추진
행사장경관	야간경관 테마경관	- 줄조명, 경관 조명 조형물 활용 야간행사 분위기 조성 - 농수산물 테마에 맞춘 경관 시설물 배치 - 시장 내 캠핑장 또는 이에 준하는 컨셉의 야장 설치

○ 기타

- 행사장 안내 및 안전관리, 현장관리에 필요한 인원을 충분히 배치
-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소화기, 안전가드, 바리케이트 등)을 구비하고 행사 전 배상책임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
- 행사에 필요한 공간 확보사항을 확인하고, 임차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납부
- 수도, 전기, 쓰레기처리 등 행사장 정리 필요사항 확인 및 부대비용 납부

□ 일반사항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을 포함한 계약문서와 제안서 관계법령,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과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업단의 지시에 따라 보완해야 함
-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 사업단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과업수행 상 부적당하거나 자격미달 등 인 것으로 판단될 경우 교체(변경)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사업수행 보고사항

-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7일 이내 사업 총괄 책임자를 임명하고 과업수행계획(수행방안, 수행조직, 참여인력, 시방서, 관련도면 등 포함)을 수립하여 사업단에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함(착수보고 진행)
- 계약상대자는 사업계획 변경 시 사업단 사전승인 후 시행하여야 함
- 일정 및 진도관리 : 추진일정에 따른 세부과업 일정의 적합성 및 일정별 진행률 관리(수행업체는 사업기간 중 수시보고 및 정기보고를 통하여 일정계획에 따른 진도율을 사업단에 보고하여야 하며, 일정지연이 발생할 경우 지연원인 및 해소방안, 일정준수 방안을 제시)
- 투입 자원관리 : 투입인력 및 장비, 기술 등의 적정성 관리(수행업체는 투입 인력 및 자원이 변경, 변동될 경우 즉시 사업단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단의 승인 없이 투입인력과 자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위험관리 : 사업목적, 추진일정 및 진척률, 품질, 기능 및 성능 등에 대한 이슈 및 리스크 요인 관리(수행업체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업 목적에 준거한 완성도, 산출물의 품질, 기능, 성능 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발생할시 즉시 해소방안 등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함)
- 검수 신청 : 과업 종료일 7일 이전 업체에서 검수신청서를 통해 처리

□ 사업의 시행

- 계약상대자는 사업단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
-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 및 사업단의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의 사업운영이 적절하지 않거나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사

업단은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사업 시행 후 사업 전체 결과보고서를 사업 종료일부터 1주 이내에 사업단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변경할 수 있음
- 정략적, 정성적 결과 포함한 결과보고서 제출
- 사업단은 이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지도·감독함
- 사업단은 필요한 경우에 사업과 관련된 각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지정한 자로 하여금 계약상대자 업무처리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함
- 사업단은 계약상대자의 업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하자책임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결과물 및 성과품 등에 하자가 발생 할 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며, 발주기관의 수정 또는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함
-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불법적인 자료를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제 3자와의 초상권, 저작물의 판권, 지적재산권, 음원저작권 등 제반권리사항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함

□ 손해배상 등

-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함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단이 제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 된 손해 배상 등을 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사업단에게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함

□ 계약의 해지 등

- 사업단은 다음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음
 - 1) 계약상대자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 중대한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경우

- 2) 계약상대자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시정요구 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의 정상수행이 어렵다고 사업단이 인정하였을 경우

□ 회계처리

- 계약상대자는 사업단이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

□ 기타사항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본 사업의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당연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단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사업을 진행함
- 제안심사 위원이 요구한 추가 사업내용이나 업체에게 추가로 사업을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제안내용으로 간주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사업단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함
-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업단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함

단계	산출물명	제출(작성)시기	수량	담당	비고
준비	○과업지시서	입찰공고전	1부	사업단	
	○입찰공고서	입찰공고전	1부	사업단	
수행	○제안서	제안서 제출일	8부	업체	
	○기술협상	통보 이후 10일 이내	1부	사업단/업체	
	○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국세, 지방세완납증명서 - 산출내역서 - 청렴계약이행각서 - 법인통장사본	기술협상 후 7일 이내 계약서 작성시 첨부 계약서 작성시 첨부 계약서 작성시 첨부 계약서 작성시 첨부 계약서 작성시 첨부 계약서 작성시 첨부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사업단/업체	
	○착수계 - 과업수행계획서 - 참여인원 프로필 - 참여인원 보안각서	계약 후 10일 이내 착수계 제출시 첨부 착수계 제출시 첨부 착수계 제출시 첨부	1부 3부 1부 1부	업체	
	○과업추진보고서	주간, 월간 단위 제출	필요수량	업체	협의
	○위험관리보고서	보고사항 발생시	필요수량	업체	협의
	○요구사항관리보고서	요구사항 발생시	필요수량	업체	협의
	○업무협의 및 의결서	업무협의 발생시	필요수량	사업단/업체	협의
완료	○검수신청 및 검수조서	계약완료 시점 7일 이전	1부	사업단/업체	협의
	○완료계 - 완료보고서 - 거래내역서 - 성과품인수인계서 - 하자보수이행확약서 또는 이행보증증권제출 - USB	검수결과 적통 통지 후 7일 이내 완료계 제출시 첨부 완료계 제출시 첨부 완료계 제출시 첨부 완료계 제출시 첨부 완료계 제출시 첨부 완료계 제출시 첨부	1부 1부 1부 2부 1부 1부 1식	업체 업체 업체 업체 업체 업체 업체	